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26.8.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기본계획 마련 절차 개편(안 제2조)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 주도로 전환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직접 수립,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나.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절차 마련 (안 제3조)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제5조제6항 및 제6조4항에서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하는 시행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범위를 규정

다.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수립 절차 마련 (안 제4조)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원전략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라. 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절차 마련 (안 제5조)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제6조의3제2항 및 5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마.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규정 삭제 (안 제5조의2 삭제)

법률 개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제5조의2)를 삭제하고자 함.

바.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규정 삭제 및 위원의 해촉 해제 등 관련 규정 삭제 (안 제6조~제7조 삭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 제9조)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제6조) 및 위원의 위촉 해제 등(제7조)을 삭제하고자 함.

사. 특성화 지방대학 지원 근거 정비 (안 제11조)

법률 개정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 지원 요건을 “특성화 분야 육성(제5항)”에서 “지역발전 선도(제6항)”으로 정비하고자 함.

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규정 삭제 (안 제6장 삭제)

법률 개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운영(제16조),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제17조), 특화지역 지정·변경·해제(제18~20조) 등 제6장 전체를 삭제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20. ~ 6.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해당 기본계획 적용 시작연도(이하 “시작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시작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

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국가 계획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기본계획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재원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단순 수치를 수정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학 및 관계 행정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 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및 지방대학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위탁기관 선정 및 조사 방법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수정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시·도지사가 제6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변경)”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2. 재정 집행 실적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하며, 심의를 거쳐 종합된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행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 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추진실적 점검의 세부 절차, 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지원 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립한 지원전략을 조정·종합하여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을 “(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를 “세부 지원전략을 종합·조정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로,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해의 소관 분야 세부 지원전략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

을 매년 4월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조정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에 따라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을 “제6항에 따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으로 한다.

제6장(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지원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이 영에 따라 새로 수립하는 최초의 시·도 기본계획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일 전에 교육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시·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지침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장·도지사(경기도지사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	제2조(시·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해당 기본계획 적용 시작연도(이하 “시작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시작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기본계획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재원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단순 수치를 수정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학 및 관계 행정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필요

<신 설>

<신 설>

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

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및 지방대학의 의

견수립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위탁기관 선정

및 조사 방법 세부 기준에 관

한 사항

4. 기본계획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수정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신 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문별 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세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정정하거나 그 밖에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

만,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시·도지사가 제6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육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
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
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주요 사업
의 추진 현황

2. 재정 집행 실적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이행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하며, 심의를 거
쳐 종합된 결과를 매년 8월 31
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

<신 설>

<신 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

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행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 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추진실적 점검의 세부 절차, 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전략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립한 지원전략을 조정·종합하여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원전략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해의 소관 분야 세부 지원전략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

② -----
----- 세부 지원전략을 종합·조정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4월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조정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제7조제1항은 제외한다)은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각각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으로, “위원회”는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로, “위촉을 해제”는 “지명을 철회”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삭 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
릴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위
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
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
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임기 만

<삭 제>

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 ③
(생 략)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
학에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성화 분야를 육
성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
체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
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6항에 따라 지역발전을 선도
하는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방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부
설된 기관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 강화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
리법인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 및 지원에 필
요한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라 한다)을 포함[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

<삭 제>

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
교육기관의 장과 그 밖에 지방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지역협업위원
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협
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공동위원
장이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회
의를 소집하며, 협의를 통해 그
회의의 의장을 정한다.

⑤ 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는 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업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 정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
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
다.

제1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삭 제>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대
한 규제특례 적용기간

2.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제
정·개정과 해당 고등교육기
관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 등
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특례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
하는 고등교육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등
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및
그 반영 여부

5.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
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
법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 기간은 30일 이상
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
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1항제1호의 규제특례 적용
기간

3.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
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장
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

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
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
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
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
년 또는 2년의 기간 중 고등교
육혁신특화지역계획의 내용, 규
제특례의 효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지역분과위
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기간을
말한다.

<삭 제>

제20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 등) ① 법 제24
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말한다.

<삭 제>

1.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학과명 또는 학생정원을 변경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
는 계획의 변경·폐지 등에

따라 용어·문구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4.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제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서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235